

삼정KPMG DPP

IFRS Brief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4년 1·2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 [IFRS 9 개정] 일반 위험회피회계
- [IAS 19 개정] 종업원 기여금
- [연차개선 개정] 2010-2012, 2011-2013 Cycle
- [공개초안] IAS 27 : 지분법
- [공개초안] 연차개선 2012-2014 Cycle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Global 동향

- 2013년 10월, 11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 2013년 11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No.36

- 2014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은 다음과 같습니다.

[IFRS 9 개정] 일반 위험회피회계

배경

2013년 11월, IASB는 IFRS 9 '금융상품(2013)'의 일부인 새로운 '일반 위험회피회계' 기준서를 발표했으며, 해당 기준서는 위험회피회계가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 정책에 더 부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준서는 헤지수단, 헤지대상 위험, 헤지대상항목을 더 확대하여, 실제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더 많은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 평가

새로운 기준서의 효과성 평가는 전진적인 평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효과성의 정도에 대한 bright line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절차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위험회피관계가 소급적으로 80%에서 125%의 효과성 범위 내에 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위험관리 목적과 다른 모든 질적 기준을 만족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자발적으로 지정 철회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hedge ratio)에 대한 효과성 요구사항을 후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위험회피요건을 충족하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위험관리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재설정(Rebalancing)은 적용되지 않으며,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어야 한다.

더 넓은 범위의 위험회피회계 적용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확대

현행의 IAS 39와 비교할 때, 새로운 기준서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위험회피전략은 아래와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IAS 39에서는 비금융항목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위험 또는 환율변동위험만 위험회피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비금융항목의 식별가능하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원칙적으로 식별가능하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으나, 관측가능한 실제 이자율을 근거로 인플레이션 커브를 구성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순노출(Net position)과 계층 요소(Layer components)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항목의 집합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 순노출을 구성하는 항목의 집합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 집합의 항목은 위험관리 목적상 집합단위로 함께 관리된다.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할 때에만 순노출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 위험회피를 지정할 때, 예상거래의 성격과 수량뿐 아니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보고기간을 명시

계층요소(예시 : 1,000원의 확정계약 중 마지막 800원 해당 부분)도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옵션을 포함하는 계층요소는 조기상환옵션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 포함된 경우라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결합위험(Aggregated exposures)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위험으로 구성된 결합위험은 위험관리목적상 함께 관리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는 지분상품

IFRS 9에서 기업은 지분상품 투자의 최초 인식 시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서에서 이러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이나 주시가격 변동위험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2.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처리되는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부채는 외화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외화위험 이외의 다른 위험회피에 대해, 비파생금융상품은 전체 혹은 액면금액의 일부분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공정가치 선택권의 확대

새로운 기준서는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한 신용위험관리에 대한 공정가치 선택권

일반적으로 신용위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대안으로, 기업이 신용위험노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한다면 특정 신용노출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신용노출은 IFRS 9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 신용노출의 명칭(예 : 대출약정의 채무자나 보유자)이 신용파생상품의 참조기업(reference entity)과 일치되어야 한다('name matching').
- 금융상품의 우선순위가 신용파생상품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상품의 우선순위와 일치되어야 한다.

Own-use exemption에 해당하는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에 대한 공정가치 선택권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고 자가사용 면제조건을 충족하여 IFRS 9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에 대하여 공정가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가치 선택권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회계불일치를 제거할 수 있다.



- 상품계약이 IAS 39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이행계약에 해당하여 회계 처리되지 않음
- 상품계약의 가치변동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업이 IFRS 9(2013)을 적용하는 경우, 매크로 위험회피와 관련된 기준서가 시행될 때까지 새로운 '일반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연기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위험회피회계를 조기적용하는 것은 현재 발표된 모든 IFRS 9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혹은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새로운 일반 위험회피모형에 대한 경과규정은 제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된다.

[IAS 19 개정] 종업원 기여금

IASB는 2013년 11월, IAS 19 개정, "종업원 기여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사항은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회계처리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배경

기존의 IAS 19에서는 확정급여제도 회계처리 시 종업원이나 제3자가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근무원가를 감소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단순한 제도에서는 오히려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단순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

확정급여제도 중 기업뿐만 아니라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의 회계처리에서는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차감하였으며,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적용되는 IAS 19(2011)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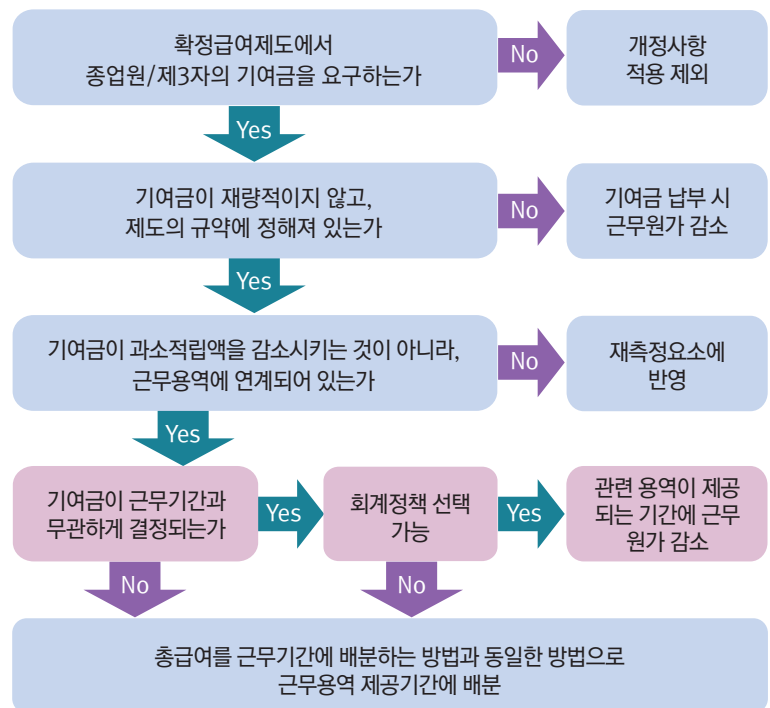
-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미래 기여금을 예측하고
- 이 기여금을 제도의 급여산정식에 따라, 혹은 정액법으로 근무기간에 부의 급여로 배분

결과적으로,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은 순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에 포함해야 한다. 많은 경우, 과거의 실무와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보합수리적 계산이 복잡해지게 되었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기여금 회계처리에 대한 이러한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법은 ① 제도의 공식적인 규약에 정해져 있고, ②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으며 ③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여금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여금이라면, 기업은 관련된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기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회계정책 선택).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기여금은 종업원급여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거나, 근무기간 중 고정된 금액으로 또는 종업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개정사항으로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 기여금이 순당기근무원가와 확정 급여채무의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 기여금은 제도의 기여금 산정식 또는 정액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연차개선 개정] 2010-2012, 2011-2013 Cycle

2013년 12월 12일, IASB는 연차개선 2010-2012 Cycle과 2011-2013 Cycle의 기준서를 발표하였다. 연차개선은 긴급하지는 않으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모아서 개정 기준서를 발표하는 프로젝트이다.

주요내용

2010-2012 Cycle과 2011-2013 Cycle에서는 총 9개의 기준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서	개정 사항	시행일
IFRS 1	최초채택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IFRS 기준서 최초채택기업은 최초 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 적용기간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조기적용이 가능한 기준서를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2014년 7월 1일부터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IFRS 2	가득조건의 정의 가득조건을 구성하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 각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성과조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을 말함. ·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의 근무를 완료해야 함 · 특정 성과 목표는 거래상대방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충족되어야 함. 성과목표가 필수 용역제공 기간이 완료된 후에 달성된다면 비가득조건에 해당함 성과목표는 기업 자신의 영업 또는 활동을 기준으로 정의되거나, 기업 지분상품의 가격 또는 가치를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여기서 “기업”은 동일 연결실체 내의 기업을 포함함. 기준서에서는 다음을 명확히 함. · 시장성과조건과 비시장성과조건을 구분하는 방법 · 성과조건이 비가득조건과 구분될 수 있는 기준	부여일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주식기준보상에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IFRS 3	조건부대가의 분류와 측정 사업결합에서 조건부대가의 분류와 측정을 명확히 함 · 조건부대가가 금융상품이라면, 부채와 자본 분류는 IAS 32 “금융상품 : 표시”기준을 적용	2014년 7월 1일부터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기준서	개정 사항	시행일
IFRS 3	· 조건부대가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다면 후속기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반영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기준서도 함께 개정되어, 조건부대가를 후속기간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취득자의 조건부대가는 총당부채에서 제외하도록 IAS 37 “총당부채,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개정함	2014년 7월 1일부터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공동약정 구성에 대한 범위 제외 개정 전 IFRS 3에서는 조인트벤처의 구성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IFRS 11 “공동약정”의 제정에 따라 조인트벤처가 특정 형태의 공동약정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으므로, IFRS 11의 모든 형태의 공동약정의 구성을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IFRS 3을 개정함	2014년 7월 1일부터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IFRS 8	영업부문의 통합에 대한 공시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을 통합하여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통합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추가 ·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설명 · 영업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제적 지표 보고부문의 자산 합계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은 이러한 정보가 기업의 최고경영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경우에만 요구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2014년 7월 1일부터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IFRS 13	단기수취채권과 지급채무의 측정 IFRS 13을 제정하면서 “명시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는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송장의 원본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단기수취채권과 지급채무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IFRS 13에 추가함	2014년 7월 1일부터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 범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시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의 순노출에	2014년 7월 1일부터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기준서	개정 사항	시행일
IFRS 13	근거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예외' 조항은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IAS 32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2014년 7월 1일부터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IAS 16 & IAS 38	재평가 시 감가상각(상각)누계액의 재작성 IAS 16이나 IAS 38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항상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함 · 총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 - 자산의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즉,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또는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재작성 - 감가상각누계액이 총장부금액과 손상차손을 고려한 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금액이 되도록 조정 ·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인식된 재평가에 개정사항 적용. 조기적용 가능
IAS 24	특수관계자의 정의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요경영진서비스(key management personnel services)를 제공하는 기업(관리기업)을 포함함. 주요경영진서비스가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보고기업은 관리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공시해야 하며, 또한 IAS 24에 따라 공시대상이 되는 관리기업과의 다른 거래들도 공시	2014년 7월 1일부터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IAS 40	IFRS 3과의 관계 IAS 40 "투자부동산"을 개정하여 다음을 명확히 함. · 기업은 취득한 부동산이 IAS 40의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해야 함. · 투자부동산의 취득이 IFRS 3의 사업을 구성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를 수행해야 함	2014년 7월 1일부터 전진적용하며,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투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선택적용 가능

[공개초안] IAS 27 : 지분법

2013년 12월 3일, IASB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와 관련하여 지분법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이들 투자에 대해서는 원가법, IAS 39에 따른 평가에 더하여 추가로 지분법도 선택가능한 옵션이 될 것이다.

지분법의 선택 적용이 모든 투자의 분류에 허용되는지를 포함하여, 다른 구체적인 적용지침은 공개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개초안] 연차개선 2012-2014 Cycle

2013년 12월 11일, IASB는 연차개선 2012-2014 Cycle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

공개초안 2012-2014 Cycle에서는 총 4개의 기준서 개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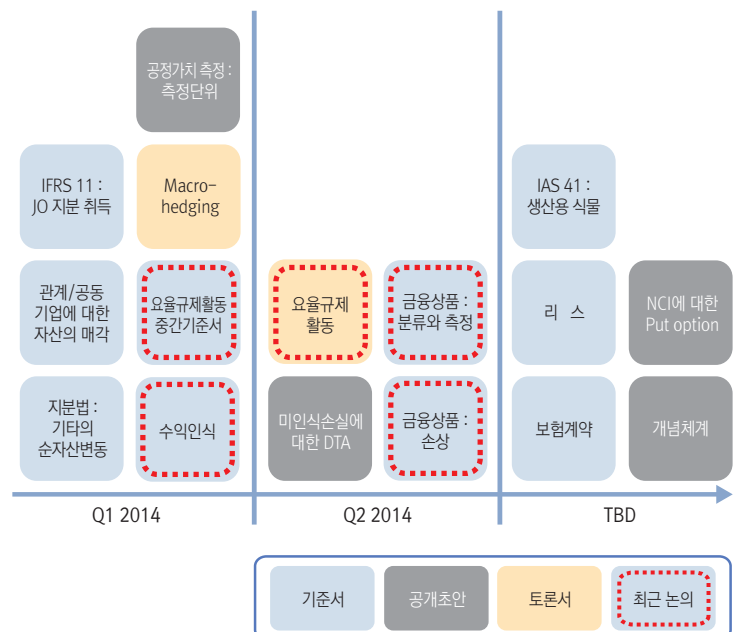
기준서	개정 사항	시행일
IFRS 5	자산의 매각계획을 분배계획으로 변경 · 자산의 처분 방법을 변경하여 매각예정자산을 분배예정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면,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 회계처리를 계속 적용하여 회계상 미치는 효과는 없음 · 분배예정 자산이 더 이상 즉시 분배가 가능하지 않거나, 분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더 이상 분배예정자산이 아니며 매각계획의 변경에 대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함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IFRS 7	관리용역제공계약이 금융자산 양도에 대한 공시 목적 상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는지 관리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IFRS 7의 '전체가 제거된 금융자산 양도 공시 목적 상 지속적 관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관리용역 제공자가 양도된 자산의 미래 성과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면, 지속적 관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 조기적용 가능
	상계 공시가 요약 중간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2013년부터 적용되는 IFRS 7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공시사항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IAS 34 “중간재무보고”에서 요구되는 경우에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함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 조기적용 가능



기준서	개정 사항	시행일
IAS 19	지역시장에서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 결정 확정급여채무의 할인율을 결정할 때에는 급여가 지급되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발행된 우량회사채나 국공채를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는 통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국가별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님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 조기적용 가능
IAS 34	IAS 34의 공시사항이 중간재무제표 외의 다른 곳에 공시될 수 있는가 IAS 34를 개정하여 특정 공시사항이 중간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는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될 수 있으며, 중간재무제표와 그 중간재무보고서를 상호참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공개초안에 따르면, 중간재무보고서는 중간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 조기적용 가능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IASB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들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프로젝트 중, IASB의 10, 11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IFRS 9 금융상품

1. 분류와 측정

사업모형평가

사업모형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사업모형의 의미 : 현금흐름 및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실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즉, 현금흐름의 회수 혹은 매각, 회수와 매각
- 사업모형 평가에 고려되어야 할 정보 :
 - 현금흐름 및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관리되는 활동과 위험에 대하여 관련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 기업은 평가일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모형이 평가되어야 하는 수준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관리되는 금융자산의 그룹을 반영하는 수준
- 사업모형 평가시 실제 발생한 '매각'의 영향 : 매각자체가 사업모형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매각활동에 대한 정보만을 단독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 사업모형의 변경 : 기업이 영업에 유의한 수준의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만 변경

수취목적보유 범주

매각활동이 동 사업목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결론을 내렸다.

- 유의적이지 않거나 드물게 발생하는 매각은 수취목적보유 사업모형에 반하지 않는다.
- 실제 매각과 관련한 정보 자체만으로 사업모형평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신용악화에 따른 잠재적인 신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각 활동은 수취목적보유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정가치 범주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새로운 측정 범주인 FVOCI 범주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두 가지 범주와 관련하여 각각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FVTPL 범주

- 금융상품이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고 관리되거나 매매목적으로 보유될 때, 매각 또는 보유 여부의 결정 등 기업의 의사결정은 공정가치변동에 근거해야 한다.
- 기업의 활동은 공정가치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주요경영진은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이용한다.



- 재무제표이용자도 기업의 성과평가에 있어 해당자산의 공정가치정보에 관심을 둔다.

FVOCI 범주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각목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보유목적이 아니라 보유목적 달성을 위해 관리한 결과이다. 보유목적의 예로는, 유동성관리, 이자율위험관리, 만기불일치 관리 등이 될 수 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각을 통한 현금흐름의 실현은 모두 FVOCI 사업모형에 필수적이며, 매각의 빈도와 규모에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2. 손상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

IASB는 리볼빙 신용제공에 대한 예상손실 결정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는 이러한 계약상 능력이 신용손실에 대한 기업의 노출을 계약상 취소통보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예상신용손실은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고 미래의 대출실행을 회피할 수 없는 기간(behavioral life)를 고려해서 산정)에 대해 추정되어야 한다.
- 약정에 대한 예상신용손실은 실행된 신용에 대한 예상신용손실을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유효이자율을 사용해서 할인되어야 한다.
- 약정에 대한 예상신용손실에 대한 총당부채는 실행된 신용의 예상신용손실에 대한 총당금과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FVOCI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IASB는 FVOCI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예상신용손실 회계처리에 대해 12개월 예상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에 면제조항을 주지 않고, 공개초안의 내용을 유지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또한, IASB는 신용손실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를 예상신용손실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예상신용손실을 추정하기 위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하는 경우, 경영진은 신용위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II. 수익

IASB는 수익인식 최종기준서의 발표예상시기를 다시 2014년 1분기로 연기하였으며, 10월 IASB 회의에서 그 동안의 쟁점사항 세 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익금액 제한(Revenue Constraints)

변동대가로 수익금액이 결정되는 매출에서, 수익인식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level of confidence를 제시하기로 함

매출액 또는 사용량 기준으로 책정되는 로열티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러닝로열티를 추후에 매출 또는 사용이 발생할 때 수익인식 하도록 함

라이선스 매출

라이선스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인식을 달리하도록 함

- 지적재산권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
- 지적재산권의 사용권 부여 : 일시 인식

III. 요율규제활동

IASB는 과거 회계기준에서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자산, 부채를 인식하였던 기업들이 IFRS를 최초로 도입할 때에 그 자산과 부채를 계속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제규정을 담은 중간단계 기준서를 2014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며,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간단계 기준서

IASB에서는 2013년 9월에 발표했던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공개초안의 기존 내용과 같이 과거회계기준에서 요율규제자산과 부채를 인식했던 IFRS 최초채택기업들만이 중간단계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다음 사항은 공개초안과는 다르게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요율규제에 따른 가격이 기업에 허용가능한 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내용을 삭제
- 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예외를 두어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규제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 시 과거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
- 기준서에 따라 다른 항목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새로운 규제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님
- 규제자산/부채 잔액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되는 항목과 OCI에 인식되는 항목으로 분리

중간단계 기준서는 2016년부터 의무적용되고, 조기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Global 동향

I. 2013년 10, 11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3년 10월과 11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약정과 관련된 세 개의 공개초안에 대한 재고려

IASB는 공동약정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제안된 세 개의 공개초안에 대하여 종료절차를 논의하였다.

공개초안 - 투자자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사이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ED/2012/6 *Sale or Contribution of Assets between an Investor and its Associate or Joint Venture*)

IASB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와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제출자들의 제안과 해석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확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안된 IFRS 10의 개정안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경우에 적용된다.
- 지배력 상실로부터의 손익은 IFRS 10 문단 B99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재분류 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된 IFRS 10 문단 B99A 상 손익의 일부 제거 규정은 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한 IFRS 10과 IAS 28의 개정안에 대하여 조기적용을 허용할 것이며, IFRS 최초채택기업이 이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공개초안 -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ED/2012/7 *Acquisition of an Interest in a Joint Operation*)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제출자들의 의견과 해석위원회의 피드백을 논의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 공동영업 지분의 취득에 대한 지침은 공동영업 지분의 최초 취득, 같은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추가 취득에 모두 적용
- IFRS 3 '사업결합'과 그 밖의 다른 기준서들 상 관련된 원칙이 IFRS 11의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적용
-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을 공동영업에 출자하여 공동영업의 성립이 사업의 구성과 동시에 발생하면 이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



공개초안 - 지분법 : 기타 순자산 변동의 몫(ED/2012/3 *Equity Method : Share of Other Net Asset*)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의견과 해석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실무상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하나, 공개초안은 현행 기준과 상충되므로 계속 진행할 수 없고 해석위원회가 제시한 안의 경우에는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콜옵션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제안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투자자의 포괄손익계산서 상 피투자자의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특히 주식기준보상 거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동 분석에 포함할 것을 스탭에게 요청하였다.

2. [IAS 16/IAS 38] 감가상각 및 상각 방법의 명확화

IASB는 감가상각 및 상각 방법의 명확화에 대한 최종 기준서의 확정을 위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산의 소비 외의 다른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음
- 수익과 자산의 소비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거나, 무형의 권리가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는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수익은 상각비 결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IAS 38 '무형자산'에 추가
- 무형자산에 내재되어 있고, 기업의 무형자산 사용에 대한 제한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참고하여 상각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
- 감가상각/상각비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 패턴의 추정치라는 것을 명시

3. [IAS 1] '재무제표 표시' 개정

부채의 유동과 비유동 분류

현행 IAS 1에서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IASB에서는 부채의 유동과 비유동 분류는 보고기간말 현재,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약상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잠정 결정하였다.

- 문단 69(4)에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무조건'을 삭제



- 문단 73에서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라는 규정에서 '재량권'을 '권리'로 변경하여, 69(4)와 일관되도록 함
- 문단 73에 '현금이나 다른 자산의 이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부채의 결제를 자원의 유출과 연계시킴
- 문단 73을 재검토하여 차환이나 연장이 '동일한 대여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이라는 것을 추가

II. 2013년 11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3년 11월의 IFRS IC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RS 개정 진행 중인 사항 관련 논의

(1) IFRS 2 - 성과조건을 포함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

해석위원회는 성과조건을 포함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 시, 성과조건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전 회의에 이어 논의하였으며, IFRS 2에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IASB에 권고하였다.

-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 추정
에 반영
-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 추정에 반영
하지 않으며,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상의 수량에 반영함. 이러한 추정은 부
채의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 시 재검토해야 함.
- 누적 기준으로, 가득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식기준보상이 가
득되지 않는다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어떤 금액도 인식하지 않음.

또한, 해석위원회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성과조건에 대한 사례를 실무적
용지침에 포함해야 하며, 다른 IFRS 2 개정과 함께 연차개선에 포함할 것을 권
고하였다.

2. IFRS IC Agenda decisions

(1) IAS 8 -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

해석위원회는 회계변경이 있을 때,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회계정책의 변경인지에
대한 구분이 실무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
히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해석위원회는 IAS 8의 문단 35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구
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추
정의 변경은 추정치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변경뿐만 아니라, 추정치를 개발하



는 방법의 변경도 포함한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추정 방법의 변경을 포함하여 회계추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개념체계 프로젝트나 공시 프로젝트에서 함께 고려할 것을 IASB에 권고할 것이다.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36 2014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기업들이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서와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서	관련 IFRS Brief
IFRS 10, IFRS 12 및 IAS 27 개정 : 투자기업	2013년 1·2월호
투자기업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한다. • 사업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투자기업은 자본이득과 투자수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주요 활동과 함께 실질적인 투자관련 용역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투자자에 대한 경영관리 용역, 전략에 대한 조언 또는 재정적 지원 활동들은 별도의 실질적인 활동을 구성하거나 별도의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투자관련 용역이 종속기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이 종속기업들은 연결되어야 하며 공정가치 회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K-IFRS 1110 문단 32, B85C~B85E)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그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니라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투자기업들의 지배기업은 은행, 보험사 또는 자산운용사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을 여전히 연결해야 하므로 이 규정은 유의적인 제한이 될 것이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이 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벤처캐피탈 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들이 지분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은 종전과 동일하다.	



IAS 32 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2012년 2월호

IAS 32와 상계 규정은 동일하나, 동 상계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 기업과 모든 거래상대방의 파산, 지급 불능 시에도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 보유해야 함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 해당 결제방식에 따라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제거되거나, 유의적이지 않은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잔존
 - 관련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단일의 결제 프로세스 내에서 처리

IAS 36 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2013년 7·8월호

기존 IAS 36에서는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손상차손 인식(또는 환입) 여부에 관계없이 각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규정을 개정하여 손상차손 인식(또는 환입)한 경우에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손상차손을 인식(환입)한 영업권, 개별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정가치측정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IFRIC 21 부담금

2013년 7·8월호

이 해석서는 법인세와 같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원의 유출이나,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제외하고, 법규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되는 것에 모두 적용된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채는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며, 의무발생사건이란 법률에 의해 인식되는 부담금 납부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발생시키는 활동이 당기의 수익 창출이고 부담금 납부액의 계산은 전기 창출된 수익에 기초하는 경우, 부담금의 의무발생사건은 당기 수익의 창출이다.



IFRIC 21 부담금

2013년 7 · 8월호

의무발생사건이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채도 전진적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면 관련된 부채도 기업이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최소 수준(예를 들면 일정금액의 수익, 매출 등)에 도달하는 경우에 부담금 납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한계치에 도달하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므로 관련된 부채는 최소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인식되어야 한다. 향후에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부담금 납부에 대한 의제무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 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IAS 39 개정 “파생상품의 경계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2013년 9 · 10월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관련 법규에 따라 중앙청산소(CCP)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르면 중앙청산소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했다. IASB는 이런 경우에 계속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도록 IAS 39를 개정하였다.

파생상품의 교체가 최초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면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 파생상품의 교체가 법규의 변경 혹은 도입에 의한 것이며,
- 교체된 파생상품의 양 거래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중앙청산소이며,
- 파생상품의 조건 변경이 거래상대방을 중앙청산소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에 해당

예를 들어 법규의 변경에 따라 파생상품을 교체하더라도 장외 파생상품을 청산소가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교체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사항을 적용받지 못할 것이다.

IFRS 2 개정 “가득조건의 정의”

본호

[본 개정사항은 현재 K-IFRS로 제정, 공표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득조건을 구성하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 각각의 정의를 추가하였음. 개정된 기준에서는 성과목표가 필수용역제공기간 완료 후에 달성된다면 비가득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용역제공기간 완료 후에 달성되는 시장조건이 아닌 성과조건이 있다면, 이 조건은 가득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분상품의 수량에서 조정하지 않으며, 비가득조건으로 처리해야 함. 즉,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해야 함. 이 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부터 전진 적용함.

Contact u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허세봉 전무

T. (02)2112-0212

E. sebhonghur@kr.kpmg.com

노원 상무

T. (02)2112-0313

E. wroh@kr.kpmg.com

현승임 이사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박은숙 이사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

한진희 S.Manager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

이지원 S.Manager

T. (02)2112-7625

E. jeewonlee@kr.kpmg.com

한상현 Manager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www.kpmg.com/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KPMG and the KPMG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